

안양시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지침

제정 1998. 11. 10 예규 제26호
일부개정 2020. 1. 31 예규 제66호(안양시 예규 중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지침, 제명개정)

1. 목적

이 지침은 고급교통수단의로서 택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택시와 관련된 각 종 부조리한 현상을 척결하고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와 모범택시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(건설교통 훈령 제69호)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운행지역: 경기도

3. 운행인가 대수

- 1998년도 ----- 택시의 10%
- 1999년도 ----- 택시의 15%
- 2000년도 ----- 택시의 20%
- 2001년도 ----- 택기의 25%
- 2002년도 ----- 택시의 30%

*법인·개인택시 수량 별도 전환

*2003년 이후 택시의 30% 도달시까지 본 지침을 적용하여 인가

4. 안가시기: 수시

5. 사업신청 대상자: 안양시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자

6. 사업자 선정기준

가. 개인택시운송사업자

- (1)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운행인가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자
- (2)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간 불법대리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
- (3) 교통관련 법규위반 벌점누산 점수가 50점 이하인 자
- (4)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또는

- 그 형의 집행 유예의 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
- (가)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
- (나)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
- (다)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
- (라) 마약법

나. 일반택시운송사업자

- (1)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간 불법경영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
- (2) 경영상태, 노사관계 안정등 정상운행 여건을 갖춘 업체
- (3) 모범택시 운행시 회사에서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관리 및 모범택시 운전자에 대하여 완전월급제로 실시하도록 노사협약이 이루어진 업체
- (4)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(건설교통부 훈령 제69호)제11조제1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무사고기간, 법규준수도, 출근율이 우수하고 성실한 운전자를 모범택시 운전기사로만 전담승무시킬 것을 확약한 업체
- (5) 지입, 도급제등 불법경영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경영이 부실하지 않은 업체

7. 부제

택시의 50% 미만시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50%초과시에는 별도로 정한다.

8. 차량조건 및 이용요금

가. 차종 및 설비

- (1) 차종
 - (가) 신조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운행중인 차량의 구조 변경시에는 차량 6개월 미만인 경우도 가능
 - (나) 배기량 1900cc이상의 일반형 승용차
- (2) 설비
 - 냉·난방 장치, 영수증 발급기(발급일시, 요금, 주행거리, 차량번호 전화번호등 기재), 빈차표시등, 자동점멸기능 기기와 무선호출에 응할수 있는 통신장비를 설비
- (3) 표시
 - 외부검정색, 태극무늬가 삽입된 황금색 띠

나. 운행요금인가

- (1) 서울, 인천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원칙으로 하여 지역간 요금 격차 해소
- (2) 심야, 시계외 등의 할증료 없이 미터 요금체제로 운영

9. 운행인가 조건

- 가. 모범택시로 인가받은 차량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의 허가를 받아 모범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나. 일반택시의 경우에는 완전 직영하여야 한다.
- 다. 모범택시의 대리운전은 모범택시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모범택시운전자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인가한다.
- 라. 모범택시 운전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은 50%한도내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다.
- 마. 모범택시운전자격증명 및 차내게시물, 홍보물을 지정한 장소에 게시 및 부착하여야 한다.
- 바. 모범택시 운전자는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사. 모범택시 운전자는 경기도 운수연수원등에서 모범택시운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아.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자. 모범택시의 사업구역은 경기도 전체로하여 운행하지만 관할사업구역밖에서 상주시 영업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한다.
- 차. 모범택시의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운행에 대한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0. 구비서류

가. 개인택시운송사업자

- (1)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1부
- (2)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
- (3)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
- (4) 주민등록 등본 및 호적초본 각 1부
- (5) 안양시 수입증지 2,000원

나. 일반택시운송사업자

안양시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지침

- (1)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1부
- (2) 법인등기부 등본 1부
- (3) 이사회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- (4) 전담승무원 다음 각 호의 서류
 - (가) 운전면허증 사본, 호적초본, 주민등록초본 각 1부
 - (나) 운전경력증명서, 국·공립 또는 종합병원 건강진단서 각 1부
 - (다)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,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각 1부
- (5) 안양시 수입증지 2,000원

11. 운행인가 주의사항

본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법규 및 훈령, 예규 등에 의하여 처리하며 지침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안양시의 의견에 따른다.

부칙

1.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. 31 예규 제66호, 안양시 예규 중 제명 띄어쓰기
일괄정비 지침>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